

QUESTIONS AND ANSWERS

(Korean – Public Charge)

5/25/99

정부 구호대상자 질의와 응답

일반

문 1: 미국 법무성 (법무성) 과 이민귀화국 (이귀국) 은 현지 지침과 정부 구호대상자에 관한 제안 규정을 왜 하달하며, 이런 문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1: 법무성과 이귀국은 이민법 내 현재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용어 “정부 구호대상자”의 뜻과, 연방, 주, 혹은 지방의 공공혜택을 받는 것과의 관계를 두고 증가하는 사회적 혼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지 지침과 제안된 규정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대상자”를 정의함으로써, 법무성은 기존하는 혼동이 발생시키고 있는 부정적 공중 위생 영향을 경감시키고, 외국인들에게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 시 고려되는 공공혜택과 고려되지 않는 공공혜택의 형태에 관한 더욱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자 모색합니다.

그 지침은 “정부 구호대상자”를 정의하고 이귀국 관리에 의해서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간주되는 혜택과 간주되지 않는 혜택의 예를 들어줍니다. 이는 또한 정부 구호대상자에 관한 기존 법을 요약하고 이러한 법 조항을 이귀국이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설명합니다.

문 2: 이민법의 “정부 구호대상자”란 무엇을 뜻합니까?

답 2: 언제라도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운 외국인은 미국 입국 자격이 없고 적법 영구주민이 되기 위한 신분 조정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 구호대상자가 된 외국인은 또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100년 이상이나 미국 이민법의 일부이었고, 근간의 이민개혁과 복지개혁법이 그 조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귀국 (미국 내에서)과 국무성 (국무) (해외에서) 둘 다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을 내립니다.

문 3: “정부 구호대상자”는 어떻게 정의되며 그 정의는 언제 실시됩니까?

답 3: 이귀국은 최초로 정부 구호대상자를 정의한 지침과 제안된 규정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대상자”는 생계유지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된 (국외 추방 수속 시) 혹은 의존하게 되기 쉬운 (입국/조정 수속 시) 외국인을 뜻합니다. 이 정의는 즉시 유효합니다. 아래에 토의된 대로, 이귀국과 국무성은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 의존을 결정할 때에 소득 보조금 목적상 현금 혜택 영수와 정부 비용으로 장기 보호시설 수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시행

문 4: 이귀국과 국무성은 정부 구호대상자 규칙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 조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답 4: 한 외국인이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우리라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은 이귀국 (미국 내에서) 혹은 국무성 (해외에서)이 외국인의 연령, 건강, 가족 상황,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과 기능을 포함한 특정적 요인을 참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부 관리는 이러한 모든 요인을 검사하여, 외국인에 대한 “상황의 전체성”을 보고, 선견적 결정을 내립니다. (재정보증서가 없는 경우 외에, 만약 요구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우리라, 즉 생계유지를 위해 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되기 쉬우리라고 판정하는 데, 어떤 한 가지 요인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대로, 비현금 혜택과 일정한 특수목적 현금 혜택은 상황 검사의 전체성하에 참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 5: 이귀국은 어떤 사람이 정부 구호대상자로 국외추방 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답 5: 정부 구호대상자임을 근거로 국외추방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무척 드문 경우입니다.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이내에 입국 이후 야기된 것이 단정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유로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면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입국 5년 이내에 공공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정부 구호대상자로 국외추방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외국인이 국외로 추방되는 것은, 만약 (1) 혜택을 제공한 주나 다른 정부 독립체가 외국인이나 혹은 다른 채무자 (예를 들면, 재정보증서의 보증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2) 계획 책임 관리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3) 외국인 혹은 외국인의 보증인과 같은 다른 채무자가 환불에 실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혜택 제공 기관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 5년 이내에 환불을 시도하고, 최후 판결을 획득하고, 그 판결상 수금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고, 그러한 시도에 성공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해도, 외국인은 그가 혹은 그녀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정부 구호대상자가 된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정부 구호대상자로서 국외추방 당하지 않습니다.

문 6: 어떤 사람이 정부 구호대상자이거나 되기 쉬우리라는 결정을 할 때는 어떠한 종류의 혜택이 고려됩니까?

답 6: 어떤 사람이 정부 구호대상자이거나 되기 쉬우리라는 결정을 함에 모든 공공기금 혜택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귀국의 지침과 제안된 규정은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혜택이 고려되고 또 고려되지 않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었거나 되기 쉬우리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 이귀국과 국무성은 외국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되기 쉬울까를 고려하는데 그 실증으로서는

- (1) 소득 보조금 목적상 현금 지원을 영수하거나, 혹은
(2) 정부 비용으로 장기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입니다. (범죄 선고로 인한 금고 이외에)

사회 복귀를 위한 단기 시설 수용은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참작되지 않습니다.

소득 보조금용 공공 현금지원으로 간주되는 공공혜택이 포함하는 것은:

- (1) 추가 안정소득 (추안소)
- (2)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지원 (임지필가)

그러나 임지필가 계획 규칙하 “지원”이라는 용어로부터 배제된 추가 현금 혜택이나 임지필가 계획에 의해서 제공된 모든 비현금 혜택과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3) 소득 보조금용 주와 지방 현금지원 계획 (흔히 주의 “일반지원”이라 불리나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음).

추가로, 국민의료보장이나 다른 계획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장기 보호시설 수용 비용은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것이 이귀국과 국무성에 의해서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될 수 있으나,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이 자동적으로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국과 조정을 위해서 상황의 전체성 검사가 적용됩니다. 국외추방을 위해서는 위의 모든 절차적 요구가 적용됩니다.

문 7: 이귀국과 국무성이 자기들을 정부 구호대상자로 간주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외국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이 있습니까?

답 7: 예. 어떤 사람이 정부 구호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되기 쉬우리라고 결정할 때에 모든 공공혜택이 이귀국과 국무성에 의해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구호대상자의 초점은 소득보조금용 현금혜택과 정부 비용으로 장기 보호시설 수용에 있습니다.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되지 않는 혜택의 예는:

장기 보호시설 수용을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 국민의료보장과 다른 건강보험과 건강 서비스 (예방주사를 위한 공공지원과 전염병 증상 검사와 치료; 건강 진료소, 임산부 보호 등 포함)

아동 건강보험 계획 (아건보계)

식량 배급표,

여성, 유아와 아동 (여유아)을 위한 특별 추가영양 계획, 전국 학교 중식과 조식 계획, 그리고 다른 추가적이며 긴급 음식 지원 계획을 포함한 영양 계획

주택 지원

탁아소 서비스

저소득 가정 전기 지원 계획 (저소가전지계)과 같은 전기 지원
긴급 재난구제
수양 자식 양육 및 입양 지원
헬 스타일 법안에 따른 혜택과 초등 중고등, 혹은 대학교육 지원을 포함한 교육적 지원
직장 훈련 계획
물품, 지역사회 기반 계획, 서비스, 혹은 지원 (무료 식당, 위기 상담과 중재, 단기 수용소와 같은).

* 모든 범주의 외국인이 상기 모든 형태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문 8: 어떤 사람이 정부 구호대상자인가를 결정할 때에 이귀국과 국무성은 모든 형태의 현금 지원을 고려합니까?

답 8: 아닙니다. 이귀국과 국무성은 소득 보조금 목적상 의도적인 현금혜택만을 고려합니다. 일부 계획, 즉 저소득가정 전기지원계획 (저소가전지계), 임지필가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된 교통 혹은 아동보호 혜택 혹은 아동보호와 발전 정액교부금 (아보발정교), 그리고 지속적 현금 지원 필요성을 피하기 위한 임지필가하 한 차례의 긴급 지급금 등은 특수 목적을 위해 현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수목적 현금혜택은 소득 보조금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치 않습니다.

문 9: 보통 식량 배급표 혜택은 종이표나 전자 혜택 카드 형식으로 주어져서 인가된 상점에서 식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지역에서는 식량 배급표 혜택이 현금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식량 배급표 혜택이 현금 형식으로 주어졌다면 이러한 혜택은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됩니까?

답 9: 아닙니다. 식량 배급표 혜택은 소득 보조금용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금 방식을 불문하고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 10: 건강보호 혜택과 국민의료보장제도와 아건보계와 같은 건강보험 계획에 등록이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됩니까?

답 10: 한 외국인이 정부 비용으로 장기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증명되듯 생계유지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한, 아닙니다. 특정적으로, 이귀국과 국무성은 국민의료보장제도나 아건보계, 혹은 유사한 주 기금 계획을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이귀국과 국무성이 소득 보조금용 공공 현금 지원 영수를 살펴봄으로써 생계유지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사회 복귀를 위한 단기

시설 수용은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 11: 정부 구호대상자 현지 지침과 규정은 여유아 계획을 위하여 1998년 3월19일 자 여유아 정책각서 #98-7, “여유아 계획 내 참여가 외국인 신분에 끼치는 영향”에서 밝힌 식품과 영양서비스의 정책을 변경시킬까요?

답 11: 아닙니다. 정부 구호대상자에 관한 신 지침과 규정은 1998년에 발표된 여유아 정책각서와 일관합니다. 여유아 정책각서는 이귀국과 국무성이 이룩한 합의에 기준하여 발전되었습니다. 신 현지 지침과 규정은 단지 여유아 계획 내 참여의 영향과 외국인 신분에 관하여 전에 이룩한 합의를 재언하고 재강조할 뿐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귀국과 국무성은 여유아 참여를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참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보증서

문 12: 재정보증서는 무엇이며, 누가 가져야 됩니까?

답 12: 개인책임 및 생업기회조정법안과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안 (1996) (불이개이책법) 213A항은 모든 가족 보증 이민과 가까운 친척이나 미국 시민 혹은 적법 영구주민 친척이 5% 이상 소유권을 가진 회사를 위해 일할 고용 기준 이민들에게 새로운 필요조건을 창조하였습니다. 1997년 12월19일 이후에 이러한 범주 중 하나로 이민 사증이나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격을 갖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재보서), 이귀국 양식 I-864를 가져야만 하고, 아니면 그 남성이나 여성은 정부 구호대상자로서 입국 거부될 것입니다. 재보서는 필요한 경우 보증인이 지원과 보조를 제공하겠다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입니다. 재보서는 일정한 법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증인이 서명 날인해야만 합니다.

보증인들은 보증 받은 외국인(들)의 연간 소득을 연방 빈곤 수준의 125%보다 적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4인 가족 빈곤 수준의 125%는 \$20,875입니다.) 만약 사증을 청원한 가족 일원이 외국인(들)을 보증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 재보서를 “공동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장차 필요하다면 그 남성이나 여성이 이민을 지원할 뜻이 있음을 표할 수 있습니다.

재보서하 보증인의 의무 이행은 이민이 귀화할 때까지, 120개월간 일을 해왔거나 총 120개월간의 일이 인정될 때, 미국을 영구히 떠나거나,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보증인과 공동보증인은 (만약 있다면) 또한 만약 이민자가 그 기간 내에 일정한 혜택을 이용하고 또 만약 정부가 보증인에게 환불을 요청한다면 정부에 환불할 것에 동의해야만 됩니다. 불이개이책법 전에는, 때때로 이귀국 양식 I-134를 사용하여 외국인을 보증하였으나, 이러한 재정보증서는 일부 법원들로부터 법 시행 불가라는 판정을 받는 바 있습니다.

I-134 양식은 아직도 계속 학생들, 가석방자들, 혹은 그린 카드 추첨 이민자들과 같이

새롭고 시행 가능한 재정보증서를 쓰도록 요구받지 않은 범주의 외국인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 13: 재정보증서는 한 외국인이 이귀국과 국무성에게 그 남성이나 여성의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실증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답 13: 예. 1997년 12월19일 후에 이민 사증이나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많은 외국인이 재정보증서를 가질 것이므로, 이귀국과 국무성은 그 외국인이 장차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울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참작할 것입니다.

재정보증서가 일부 이민자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들이 장차 생계 유지를 정부에 의존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정부를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이귀국과 국무성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연령, 건강, 고용과 교육 등 다른 요인에 기준된 상황 검사의 전체성화 이민 입국이나 신분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14: 만약 적법 영구주민들이 한 친척을 미국에 오도록 보증하기를 원할 때에, 그들이 공공혜택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면 그들의 기회에 해가 됩니까?

답 14: 보증인들은 이민법하에서 정부 구호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증 받은 외국인이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울까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들은 다른 검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들은 보증 받은 이민(들)이 연방 빈곤 수준의 125%보다 낮지 않은 연간 소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15: 왜 새로운 이귀국 재정보증서 양식은 재정보증인이나 그의 혹은 그녀의 가구가 지난 3년 사이에 자력 검사된 공공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묻습니까?

답 15: 이 질문의 목적은 결정을 내릴 이귀국 혹은 국무성 관리가 상기한 퍼센트 검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에 적절한 모든 사실들을 입수하여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데 있습니다.

보증인이 받은, 추안소나 현금 임지필가와 같은, 어떠한 현금 혜택들도 125% 소득 한계치를 충족시키는 데 가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보증인이 125% 검사를 다른 자원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들이 보증인을 불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식량 배급표, 국민의료보장, 혹은 아건보계와 같은 다른 자력 검사된 공공혜택의 영수는 보증에서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문 16: 만일 보증인이 새로운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고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16: 외국인을 지원할 의무 이행은 보증인의 사망과 함께 종결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증인의 사망 전에 축적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이 의무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만약에 공동 보증인이 있고 보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만 사망하면 남은 보증인이

재정보증서에 따라 계속 책임을 집니다. 국외추방 수속 시, 만약 보증인이 사망하고 공동 보증인이 없으면, 재정보증서에 따른 어떠한 자력 검사된 혜택들도 상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외추방 시험의 첫 검사는 만족되지 못하며 보증 받는 외국인은 재정보증서에 기준해서 추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례들

문 17: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 대상이 아닌 외국인 범주가 있습니까?

답 17: 예. 피난민과 망명인은 입국이나 신분 조정 목적상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인과 동양인의 자녀 이민들 또한 그들의 최초 미국 입국 시에 정부 구호대상자를 근거로 한 입국 거부로부터 제외됩니다.

추가로, 큐바인 조정법안, 니카라구아인 조정 및 중미 구호법안 (니조중미구법)과 해이티인 피난민 이민공정법안 (해피이공법)을 포함한 제법령은 그들 조항하 신분 조정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정부 구호대상자 근거의 입국 거부에 대한 예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문 18: 만약에 한 외국인이 과거에 현금 공공혜택을 받았으나 중지하였다면, 이귀국과 국무성이 그나 그녀를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우리라고 판정할 것입니까?

답 18: 과거 현금 혜택 영수는 한 외국인을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쉽겠다고 자동적으로 입국을 거부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외국인이 과거 실직 기간 동안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직업을 가지고 자활중이면, 그나 그녀는 거의 틀림없이 정부 구호대상자로서 입국 거부 판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혜택받는 것을 중지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참작의 무게는 더욱 덜해질 것입니다. 외국인이 혜택을 받은 시간의 길이와 받은 혜택의 양 또한 적절하게 참작됩니다.

문 19: 만약 한 외국인이 과거에 공공혜택을 받았다면, 그 외국인은 이귀국이나 국무성이 그나 그녀를 정부 구호대상자로 판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혜택을 환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분을 조정하고 적법 영구주민이 될 자격을 잃게 됩니까?

답 19: 아닙니다. 이귀국과 국무성은 외국인들이 사증 발급, 입국, 혹은 신분 조정과 관련해서 공공혜택을 환불하라고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 20: 한 외국인이 그나 그녀가 과거에 받은 공공혜택을 상환해야 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답 20: 공공혜택 환불 요청에 관한 요구 조건과 절차는 법으로 수립된 특정 계획 규칙에 의해서 주관되며 혜택 제공 기관, 주나 지방 정부들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지, 이귀국이나

국무성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민법 내 정부 구호대상자 규칙은 이러한 계획 요구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문 21: 한 외국인 가족의 일원이 공공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았으나 그 외국인 자신은 받은 적이 없으면, 이귀국이나 국무성이 이것을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그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취급할 것입니까?

답 21: 대부분의 경우에 아닙니다. 통상 규칙으로서, 외국인 가족의 일원에 의한 혜택 영수는 이귀국이나 국무성에 입국 신청을 하는 혹은 이귀국에 그나 그녀가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통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그 가족이 그들 가족 일원이 받는 공공 현금 혜택을 유일한 지탱 방법으로 의존할 때입니다. 특정적으로, 외국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자격을 갖춘 계획에 등록시키면, 그러나 그것들이 현금 계획으로서 가족의 유일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이 아닌 한, 이귀국이나 국무성이 그들을 정부 구호대상자로 고려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이 미국 시민들이든 비시민들이든 사실입니다.

만약 부모중 한 사람이 “자식만”的 용도로 현금 혜택을 위한 입지필가에 등록하고, 만일 이 현금이 가족의 총 생활비라면 이것은 이귀국이나 국무성에 의한 부나 모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출처의 유지비가 있고 혹은 부나 모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그 현금 지원은 그 가족의 총 생활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 22: 만약 한 외국인이 공공혜택들을 받으면, 이것이 그나 그녀가 미국 시민이 되는 데 해를 끼칠텐가?

답 22: 아닙니다. 귀화 수속 시 정부 구호대상 검사가 없기 때문에 혜택들을 법적으로 받는 한 그것들의 영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 자격을 위해 과거에 받은 혜택들을 상환할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문 23: 귀화한 시민이 공공혜택들을 받은 것 때문에 그나 그녀의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답 23: 아닙니다. 누구도 공공혜택을 받은 것 때문에 그나 그녀의 시민권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한 이민이 시민이 되고 나면 그나 그녀는 모든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기준상에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혜택들 영수에 근거,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국제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을 금지 당할 수 없습니다.

문 24: 외국인이 신분을 조정하고 적법한 영구 주민이 되기 위해서 일부 혜택 계획 내에 참여를 중지해야만 합니까?

답 24: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소득보조금용 현금 혜택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적법 영구 주민이 되기 위한 신청을 하면, 그녀는 정부 구호대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현금 혜택을 받은 바 있는 외국인이 그녀가 혜택 받음을 중지한 후 이귀국이나 국무성에 재신청할 수는 있는데, 정부 구호대상자로 혹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현금 혜택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여유아, 식량 배급표, 국민의료보장, 혹은 아건보계) 적법 영구주민 신분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 계획 참여를 중지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츠지 내에서, 그 통상적 (상황의 전제성) 검사가 적용됩니다.

문 25: 만약 한 적법 영구주민이 공공혜택을 받아오다가 나라를 떠나면, 이귀국은 그나 그녀를 정부 구호대상자라는 근거로 돌아옴으로부터 정지시킬 것입니까?

답 25: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동안 미국 외부에 있던 한 적법 영주민이 돌아올 때 그녀를 정부 구호대상자 목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번에 6개월 이하씩 떠나는 적법 영구주민들은 돌아올 때 입국 신청자들로 간주하지 않고, 정부 구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입국 거부의 근거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통상 규칙에 예외들이 있으니 (1) 만약 외국인이 적법 영구주민 신분을 포기하거나; (2) 외국인이 일정한 불법 활동에 개입하거나; (3) 외국인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추방 절차중이었거나; 혹은 (4) 외국인이 입국 항 아님 곳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시도하거나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들의 더욱 상세한 기술을 위하여 이국법 101항 (a)(13)(c)를 보십시오.

문 26: 한 적영주가 나라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계속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26: 만약 한 적영주가 1개월 이상 나라 밖에 있을 계획이면, 그는 규칙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나라 혹은 거주 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재하면 많은 혜택들을 받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적영주가 부적절하게 혜택들을 받으면, 그가 미국으로 재입국하거나 시민이 되는 기회를 해칠 수 있습니다.

문 27: 만약 한 피난민이 적영주 신분으로 조정하였다가 나라를 180일 이상 떠나면, 그나 그녀는 정부 구호대상자로 판정되고 재입국이 거부되는 위험에 처합니까?

답 27: 위에서 주의된 대로, 피난민들은 그들의 입국과 적영주 신분 조정을 위한 정부 구호자 대상 결정에서 면제됩니다. 정부 구호자 대상은 여행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피난민들에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복지개혁법이나 이민개혁법 내 아무 것도 이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문 28: 한 적영주가 국제여행으로부터 돌아올 때, 이귀국이 그나 그녀의 자녀가 전에

사용했던 국민의료보장이나 식량 배급표를 상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답 28: 아닙니다. 이귀국은 이민자들에게 그러한 혜택들을 상환하라고 요청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한 이민이 혜택들을 부적절하게 받았다면 (예: 만약 한 사람이 주민이 아니면서도 자격목적상 한 주의 주민이라 주장하면, 혹은 만약 그녀가 그녀의 모든 소득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업원에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을 요청하는 것은 그 계획을 관리하는 규칙들에 기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달려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한 혜택 제공 기관은 사기 부정이나 과도 지불과 관련된 상황들에서만 상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에게 통보와 호소할 권리에 관련된 그 절차적 규칙들을 따릅니다.

문 29: 만약 외국인이 현금 복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한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귀국은 그래도 그에게 그린 카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장래에 현금 복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답 29: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귀국과 국무성 관리들은 만약 한 사람이 장래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에 위에 수록된 모든 요인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연령, 건강, 지원들, 그리고 다른 법적 요인들과 관련된 한 외국인의 현재 처지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가 현재 공공 현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도, 그들은 사증 발급이나 신분 조정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30: 만약에 한 사람이 현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매우 아프고 장기간에 걸친 요양원의 보호나 다른 장기 보호시설 수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그녀의 영구주민증 (그린카드)을 받는 데 문제가 됩니까?

답 30: 예.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요양원에서 살고 있거나 수용소 시설에 들어가야만 하는 심각한 장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녀가 필요한 치료를 국민의료보장이나 다른 정부 기금 건강계획 (예: 군 보조)을 사용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지 못하는 한, 그녀는 그린카드를 얻는 데 어려움을 당할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신체 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한 요양 시설에서의 단기 체류는 그린카드를 거부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일어난 원인들로 인하여 혜택들을 받았음을 실증할 수 있으면 그 외국인은 정부 구호대상자 근거로 국외추방 당하지 않습니다.

문 31: 정부 비용으로 장기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이 보여주듯이 생계 유지를 주로 정부에 의지하는 외국인은 정부 구호대상자로서 추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귀국이 요양원들이나 다른 장기 보호 수용시설들 내부를 습격 실시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답 31: 아닙니다. 이귀국은 정부 구호대상자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사관들을 요양원이나 다른 장기 보호시설 안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귀국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호시설 수용에 관한 정보가 이귀국에 들어오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이 추방 판정 당할 유일한 길은 상기한 모든 절차적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합니다

문 32: 만약 제가 여성에 대한 폭력법안 (폭대여법)에 따라 신분 조정을 위해 독자 신청할 자격이 있으면, 저는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까?

답 32: 행정부는 폭대여법하의 독자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 구호대상자 요구 조건의 범위를 아직도 고려중이며, 이것을 장차 지침에서 거론할 것입니다. 법은, 다른 가족 기준 이민자들과 달리, 폭대여법하 독자 신청자들이 신청서와 함께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33: 큐바/해이티 출신자들은 복지개혁법에 따라 일정한 공공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혜택들을 받으면, 그들이 정부 구호대상자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신분조정으로부터 금지 당하게 됩니까?

답 33: 답변은 그들이 어떻게 신분 조정 자격을 갖게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큐바인중 큐바인 조정법안과 니조중미구법에 따른 적법 영구주민 신분으로 조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해이티인중 해피이공법에 따라 신분 조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구호대상자 입국 거부에 법적 예외들이 있습니다. 큐바/해이티 출신들은 그들이 정부 구호대상자 면제권을 내포한 법과 다른 조항 하에서 조정을 받으려면 통상적인 정부 구호대상자 규칙들의 대상이 됩니다.

문 34: 일정한 미국인과 동양인의 자녀 이민들은 복지개혁에 따른 공공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혜택들을 받으면, 그들은 정부 구호대상자로 간주될 것습니까?

답 34: 미국인과 동양인의 자녀 이민들은 적법 영구주민들 (적영주들)로서 미국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은 그들의 최초 입국 시에 정부 구호대상자임을 근거로 한 입국 불가로부터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외국인이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고 재입국 하려 들지 않는 한, 정부 구호대상자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정부 구호대상자 검사로부터의 문제가 그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 외국인은 상황의 전체성 심사하 다른 어떤 적영주와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문 35: 만약 한 외국인이 1972년 1월1일 이래 미국에 있었고, 이민 및 국적법안 249항 “등록” 조항하 한 적법 영구주민이 되기를 원하면, 정부 구호대상자 검사가 있습니까?

답 35: 아닙니다. 정부 구호대상자는 249항하 “등록” 외국인들을 위한 요인이 아닙니다.

문 36: 이귀국이나 영사관 공무원이 비행장에서 혹은 면접시에 비시민들에게 과거에 공공혜택들을 받았는가, 혹은 그들의 가족 중에 누가 받았는가를 묻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까?

답 36: 아닙니다. 이민국 혹은 영사관 공무원들이 한 비시민이나 그 혹은 그녀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공공혜택들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시민들은 그러한 질문들에 총체적으로 또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만약 한 외국인이 한 이민국 혹은 영사관 공무원에게 그나 그녀가 식량 배급표 혹은 국민의료보장과 같은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고려로부터 면제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 그 공무원은 그 정보를 그 외국인이 한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울까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37: 이귀국은 이 정부 구호대상자 정의를 제안된 규칙으로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외국인이 그 “안전한 혜택들”중 하나, 즉 한 추가적, 비현금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최종 규칙이 그 제안된 규칙과 같지 않다면 외국인들은 현지 지침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답 37: 외국인들은 최종안이 발표되기 전에 그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귀국의 현지 지침을 신뢰해도 됩니다. 만일 최종 규칙이 제안된 규칙으로부터 다르다면, 이귀국은 그때에 현재 지침을 신뢰한 비시민들이 그 신뢰성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이민 결과에 고통받지 않도록 확고히 구상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